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2019. 3. 23. 시행 및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의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3)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하도록 함.

나. 자립지원의 확대(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8. ~ 12. 18., 2019. 1. 23.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대상·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부 칙

이 영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u> <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u>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대상·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 략) 3. <u>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u> <u><신 설></u> ② (생 략)	<u>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8조(자립지원)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u> 4. <u>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22